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1나15958 감사비용
원고, 피항소인	금◇○○○○○○○○○○○○○○
	파주시 OOO동 __-__
	대표자 회장 최□■
피고, 항소인	남○♣ (xxxxxx-xxxxxxx)
	파주시 OOO동 __-_ OOOO아파트 ___동 ____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명구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1. 8. 26. 선고 2011가소1038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27.
판 결 선 고	2012. 5.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3,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0. 12. 28. 원고에게 "본인은 OOOO아파트에 대한 1999년 9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의 관리비 회계감사를 실☆하는데 있어 이 기간 동안 1억 원 이하의 관리비 횡령이 발생하면 감사회계비용 전체를 지불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시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감수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감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지정하는 곳 1곳과 본인이 지정하는 세무사 사무실 1곳 등 총 2개 업체로 하여 투명성을 보장하며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11. 3. 25.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비용 4,840,000원을 지급하고 위 1999. 9. 10.부터 2009. 12. 31.까지의 관리비 회계감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잡지출에서 과목 재분류 사항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항 등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와는 별도로 회계감사를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4,649,756원 상당의 지급액이 감사인의 계산과 차이가 나거나 감사인의 판단으로

부적절하게 지급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사실을 확인하여 회수하거나 증빙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감사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 최□■ 등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0년 제33146호) 최□■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의뢰한 회계감사 결과 관리비 횡령액이 100,000,000원 이하로 판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바대로 원고가 회계감사비용으로 지출한 4,8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확인서(갑 1호증)에 기재된 '관리비 횡령'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형법상 횡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법 및 관리규약에 위배되는 업무 및 회계처리(회계부정)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① 피고가 의뢰한 관리비 회계감사에서 발견된 64,834,198원 상당의 금액으로 산정된 오류와, ② 원고가 그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특별수선충당금 45,000,000원, ③ 의결 없이 동대표 거마비 등으로 지출된 21,565,800원, ④ 증빙 없는 충당금 사용액 6,788,480원, 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금융 증빙을 갖추지 않고 100,000원 이상 지출한 금액 47,755,920원, ⑥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의결 없이 지급된 상여금 및 제수당 87,178,630원 등을 합하면 회계부정액이 1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회계감사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릇 '횡령'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감사비용의 부담까지 약속하며 회계감사 실☆를 주장한 것은 단순히 회계처리의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원고 대표자 등의 횡령범행을 밝

히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상의 '횡령'은 형법상의 횡령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확인서의 '횡령'을 회계부정을 포함하는 의미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희

판사 황성욱

판사 김진영